

##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(안) 입법예고

( 류동철 의원 대표발의 )

「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24일

고흥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

2. 제정이유

-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수난구호 참여자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규정 준수
-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

-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지급
- 야간 동원 및 스킨·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6조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
-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

#### 4. 예고기간

- 2020. 3. 24. ~ 2020. 4. 12. (20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. 4. 13.(월)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(의회사무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기관·단체 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제출처 :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 :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(59542)

- 전 화 : 061-830-6066 (FAX 061-830-5595)

-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직접방문

- 붙임 1.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#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

(제정) 2020. . 조례 제 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고흥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상”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.
2. “해수면”이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.
3. “내수면”이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, 댐, 호수, 늪, 저수지,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(汽水)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.
4. “조난사고”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.
  - 가. 사람의 익수·추락·고립·표류 등의 사고
  - 나. 선박 등의 침몰·좌초·전복·충돌·화재·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
5. “수난구호”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 (이하 “선박 등”이라 한다)의 수색·구조·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
6. “수난구호 참여자”란 공공기관(해양경찰서, 소방관서, 고흥군 등)의 요청 및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과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.
7. “수색”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.
8. “구조”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9. “구난”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(선박 등에

실린 화물을 포함한다)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수난구조 참여자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통제, 지휘, 신고, 안전관리,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경비지원)** 군수는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대상)**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및 고흥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며,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고흥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 한다.

1. 고흥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(수상레저기구 포함)의 조난사고
2. 고흥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흥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(수상레저기구 포함)의 조난사고
3. 그 밖에 법규에 의해 인정되는 조난사고

**제6조(지급기준)**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.

② 제1항의 수난구조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, 지급 규모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야간 동원 및 스킨·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·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,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 관할구역 지자체에 우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지원금 신청 및 지급)**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조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환수조치)**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난구호비용 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
청구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종사업무				
구호 명세	유형	내용		
	동원장비			
	사용시설 등			
	기타			
구호비용	금액			
	산출근거	*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.		

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**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**

**해양경찰서장 (인)**  
**또는 소방서장 (인)**

**고흥군수** 귀하

첨부서류	1. 물건, 시설,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
------	--

### 처리절차



청구인  
소방서

해양경찰서  
소방서

해양경찰서  
소방서

해양경찰서

청구인

군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